

김제시의회훈령 제8호

김제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 제정을 이에 발령한다

김제시의회 의장

김영자


2023년 4월 18일

김제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김제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사무위임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전결사항) ①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.

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한다. 다만,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한다.

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·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대

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.

제4조(중요사항의 보고)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 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.

제5조(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) 전결권자가 휴가,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전결사항의 효력)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